

<b>제2025-46호</b> <b>2025년 5월 20일(화)</b>	<b>시</b>  <b>보</b> <b>여수시</b>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5-24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1 |
| ○ 여수시 고시 | 제2025-24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 2 |

**공 고**

-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71호 |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 3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77호 | 도로지정 변경 공고(봉계동 330번지 외 3필지)                        | 8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78호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로드웨이(주)                              | 10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81호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 11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92호 | 여수시 택시지문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 13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594호 | 도로지정 공고(소리면 관기리 56번지)                              | 15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0호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1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1호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18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2호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9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5호 |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 34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7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 (주)한려종합개발                  | 36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08호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 (주)경성해양개발                  | 37 |
| ○ 여수시 공고 | 제2025-1611호 |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신청 공고            | 38 |

<b>회 판</b>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24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합니다.

허가번호 (허가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기간	피 허가자	
					성 명	주 소
2025-014 (25. 5. 19.)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56-8번지 지선 공유수면	오탁 방지막 설치	12,656 (직접 4,682 간접 7,974)	'25. 5. 19. ~ '26. 6. 30.	에이치제이 디오션 리조트(주)	여수시 소호로 295, 1층(소호동)

2025. 5. 19.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24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에 대해 고시 합니다.

허가번호 (변경일자)	점용·사용 장소	면적	허가받은 자		목 적	변경사항(기간)	
			주 소	성 명		변경 전	변경 후
2020-014 (2025. 5. 16.)	돌산읍 우두리 697-106번지 지선 공유수면	1,900 ㎡	여수시 돌산읍 진두공원길	백초 어촌계	어선 접안용 바지 설치	2020. 5. 1. ~ 2025. 4. 30.	2025. 5. 1. ~ 2030. 4. 30.

2025. 5. 19.

여 수 시 장

##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및 단속 시행 행정예고

여수시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9일

###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및 단속 시행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내용 및 단속시행일자

연번	위 치	구 간	내 용	단속시행일자
1	소라면 죽림리 1244 여천농협 죽림지점 앞	편측(4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6. 10.
2	학동 138 LG전자 베스트샵 앞	편측(30m)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2025. 6. 10.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단속과는 별도 운영

나. 세부장소 : 【붙임 1】 참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예고(공고)기간 : 2025. 5. 19.(월) ~ 6. 9.(월), 22일간  
4. 예고(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41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CCTV 설치 위치,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제출기간: 2025. 5. 19.(월) ~ 6. 9.(월) 18:00, 22일간

다. 제출처: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고

마. 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우편: 여수시 시청로 1, 교통관제센터 1층 주차차량과(학동) (우)59673
-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팩 스: 061-659-5864 ※ 전송 후 수신여부 확인 전화 요망

바. 문의사항: 여수시 주차차량과 주차지도팀(☎061-659-41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및 단속 예정 구간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① 소라면 죽림리 1244 여천농협 죽림지점 앞(편측 L=40m)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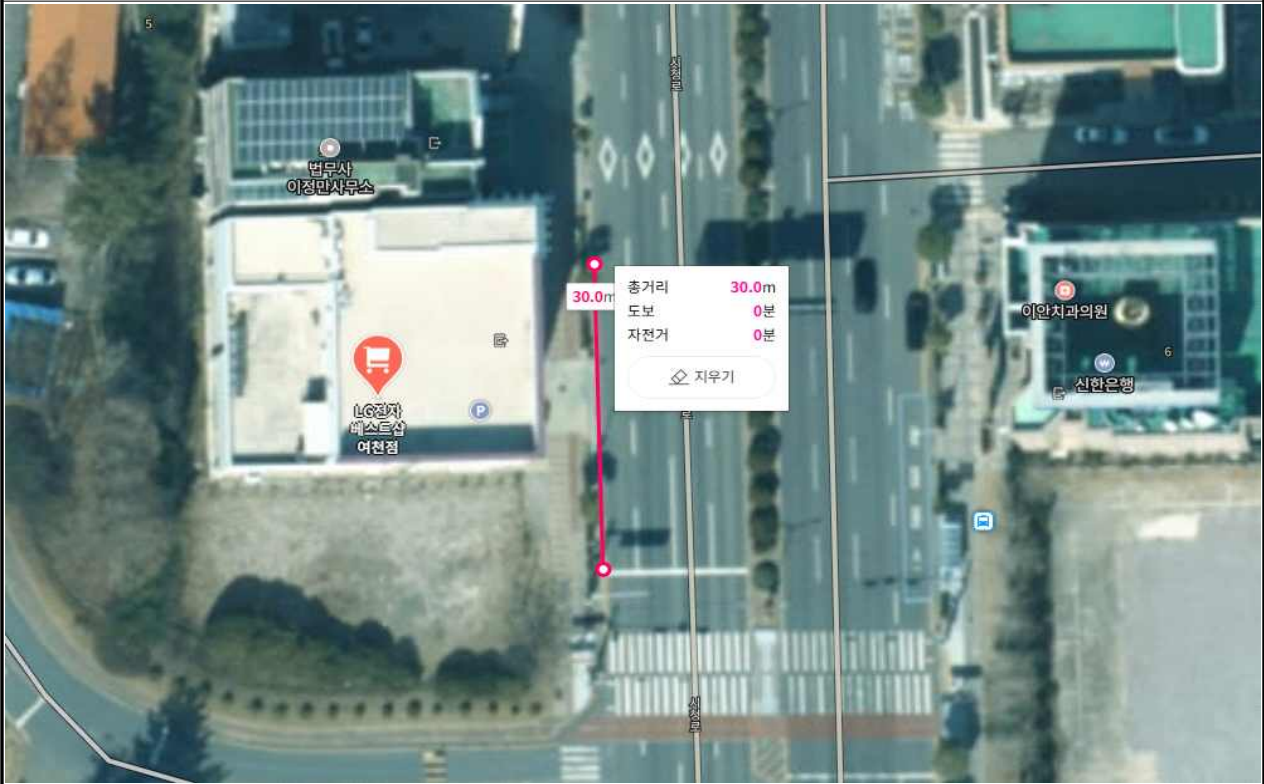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② 학동 138 LG전자 베스트샵 앞 (편측 L=30m)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도로 지정 변경 공고

여수시 봉계동 330번지 외 3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5. 5. 16.

여 수 시 장

1. 위 치 : 봉계동 330번지 외 3필지
2. 도로면적 : 176㎡
3. 도로길이 : 52.7m
4. 도 로 폭 : 6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76	
봉계동	320-3	대	274	기존	10
봉계동	320-4	대	62	신설	41
봉계동	331	대	469	당초	71
				변경	84
봉계동	330	대	274	당초	42
				변경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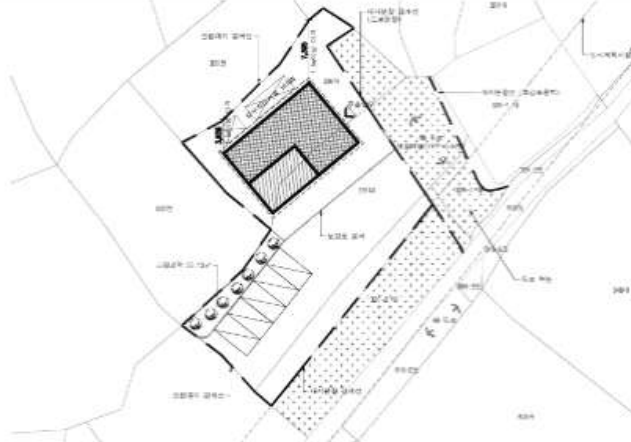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	---------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	---------------------------

##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로드웨이(주)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6-8
3. 법인 등록번호 : 224111-0015608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5-파-04	기계설비공사	2025. 5. 16.

2025년 5월 16일

여 수 시 장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연장 허가 번호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5-43	11622	바닥식 (살포식)	5.72	경호 대경	2015.06.28.- 2025.06.27. (10년)	2025.06.28.- 2035.06.27. (10년)	-	여수시 여서로 304, **	김*영	
2025-44	11631	바닥식 (살포식)	10	경호 소경	2015.07.02.- 2025.07.01. (10년)	2025.07.02.- 2035.07.01. (10년)	면제	여수시 경호동	소경어촌계	
2025-45	11632	수하식 (수하연식)	5	경호 소경	2015.07.02.- 2025.07.01. (10년)	2025.07.02.- 2035.07.01. (10년)	면제	여수시 경호동	소경어촌계	
2025-46	11633	수하식 (연승식)	10	화정 개도	2015.07.02.- 2025.07.01. (10년)	2025.07.02.- 2035.07.01. (10년)	면제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어촌계	
2025-47	11634	수하식 (연승식)	5	화정 개도	2015.07.02.- 2025.07.01. (10년)	2025.07.02.- 2035.07.01. (10년)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화산어촌계	
2025-48	11635	수하식 (수하연식)	3	돌산 죽포	2015.07.03.- 2025.07.02. (10년)	2025.07.03.- 2035.07.02. (10년)	면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두문어촌계	
2025-49	11636	수하식 (수하연식)	3.75	돌산 죽포	2015.07.03.- 2025.07.02. (10년)	2025.07.03.- 2035.07.02. (10년)	면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두문어촌계	
2025-50	11638	바닥식 (살포식)	3	화정 여자	2015.07.03.- 2025.07.02. (10년)	2025.07.03.- 2035.07.02. (10년)	-	여수시 문수북6길 **	오*선	
2025-51	11639	바닥식 (살포식)	5	화정 여자	2015.07.03.- 2025.07.02. (10년)	2025.07.03.- 2035.07.02. (10년)	-	여수시 구봉산길 **	박*욱	
2025-52	11641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7.12.- 2025.07.11. (10년)	2025.07.12.- 2035.07.11.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감도어촌계	

2025-53	11642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7.12.- 2025.07.11. (10년)	2025.07.12.- 2035.07.11.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감도어촌계	
2025-54	11643	바닥식 (살포식)	10	화정 여자	2015.07.12.- 2025.07.11. (10년)	2025.07.12.- 2035.07.11. (10년)	면제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감도어촌계	
2025-55	11649	수하식 (수하연식)	13	돌산 울림	2015.07.13.- 2025.07.12. (10년)	2025.07.13.- 2035.07.12. (10년)	1,300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20, **	기공심외1	
2025-56	11652	수하식 (수하연식)	4.5	돌산 둔전	2015.07.21.- 2025.07.20. (10년)	2025.07.21.- 2035.07.20. (10년)	-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둔전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5. 19.

여 수 시 장

##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공고

여수시 택시운송사업관련 행정운영 개선 등을 위한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명단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0. ~ 6. 2.(14일간)
  2. 위원구성: 15명(당연직 1, 위촉직 14)
  3. 위원임기: 2025. 5. 20. ~ 2027. 5. 19.(2년)
  4. 기 능: 택시 인·허가, 증차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5. 위원명단: 붙임 참조
- ※ 기타 사항은 여수시 교통과(☎659-4129)로 문의 바랍니다.

# 제6기 여수시 택시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임기 : 2025. 5. 20. ~ 2027. 5. 19.(2년)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1	위원장	최연호	여수시 교통도로국장	당연직
2	위 원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	위촉직
3	〃	신찬식	여수경찰서 교통과장	〃
4	〃	고희권	여수시 법인택시 협회장	〃
5	〃	박용건	여수시 법인택시 협회 총무	〃
6	〃	최기성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수시지부장	〃
7	〃	서민석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수시부지부장	〃
8	〃	장문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남여수지역 지부장	〃
9	〃	서정일	전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여수여객지부장	〃
10	〃	김진선	언론인(광주매일)	〃
11	〃	김상구	전남대학교 교수 (교통물류 전공)	〃
12	〃	유 성	(사)여수대안시민회	〃
13	〃	이 준	여수 YMCA	〃
14	〃	김형만	여수시민협	〃
15	〃	서수형	여수시민협	〃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56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5. 19.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56번지
2. 도로면적 : 30m<sup>2</sup>
3. 도로길이 : 8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sup>2</sup> )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794	30	
소라면 관기리	56	답	79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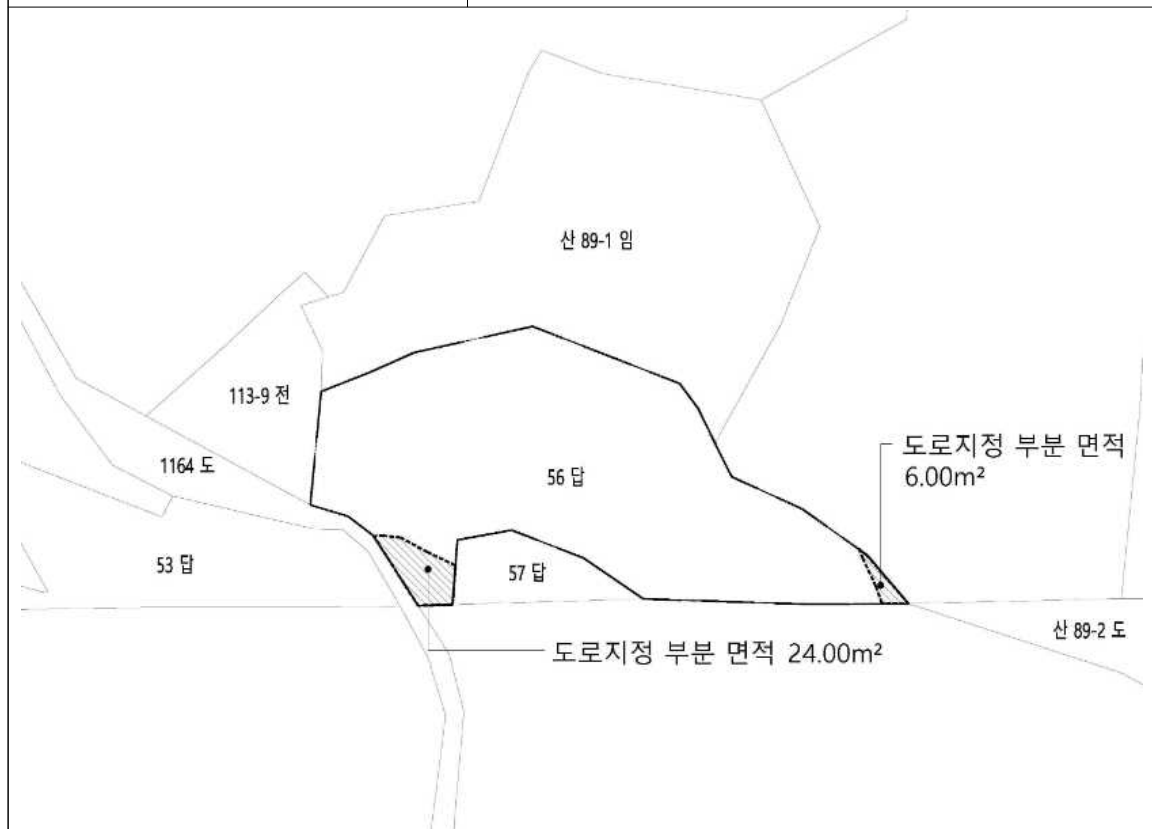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여수시 공고 제2025-1600호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2002	패류 양식	바닥식	10	화양 용주	2025.06.08. 2035.06.07.	-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용주어촌계	11015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5. 20.

여 수 시 장

##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488	마을어업	-	15	남면 두라	2025.06.21. 2035.06.20.	-	여수시 남면 두라리	나발 어촌계	10217 재개발
10489	마을어업	-	14	남면 두라	2025.06.21. 2035.06.20.	-	여수시 남면 두라리	나발 어촌계	10218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5. 20.

여 수 시 장

## 공 고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신설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신설된 사항 : 「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관할 구역 외 지원과 평가단원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개정]

-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안 제2조 1항)
-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안 제2조 1항)
- 시설물 분류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안 제2조 4항)

[신설]

-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평가단 구성(안 제2조 8항)
-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입법 예고기간 : 2025. 5. 20. ~ 6. 9.(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6. 의견제출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안전총괄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 E-Mail : dssong123@korea.kr
- 전 화 : 061-659-4042
- F A X : 061-659-5838

#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조 례 명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 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를 “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대표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여수시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단원증을 교부한다.

⑥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⑦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해야 한다.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및 해촉)**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단원 스스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교육 및 훈련)**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지원)**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경비지급)**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칙(2021. 5. 18.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단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 ]등록 [ ]말소 신청서

※ [ ]는 해당하는 곳에만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소 속		직 위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E-mail)

신청사항	[ ]등록 [ ]말소		
	전문분야 ※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건축물	[ ] 교량·터널	[ ] 댐·저수지
	[ ] 철도	[ ] 원자력시설	[ ] 항만
	[ ] 가스·전력·통신	[ ] 기타( )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 ]등록 [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첨부 서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앞쪽)

<b>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b>	
성 명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b>직인</b>	

(뒤쪽)

본 증을 분실하였거나 습득하신 분께서는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061-659-49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증 규격) 가로 12cm × 세로 9cm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p> <p>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여수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여수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③ (생략)</p> <p>④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단원은 제5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며 특정 성별의 단원 수가 10분의</p>	<p>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p> <p>① ----- ----- 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 ----- -- <u>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u></p> <p>1. <u>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u></p> <p>2. <u>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p>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토목·안전  
관리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건설  
기술인

2.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3.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

4.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재난안  
전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여수시 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 ⑦ (생략)

<신설>

<신설>

<삭제>

<삭제>

<삭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여수시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  
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  
성할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  
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어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2조 제5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5조 ~ 제8조 (생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방치물으므로 인하여 미관 저해, 선박 정박 및 항해시 안전 위험,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6월 4일(수)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5. 20. ~ 2025. 6. 4.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방치물(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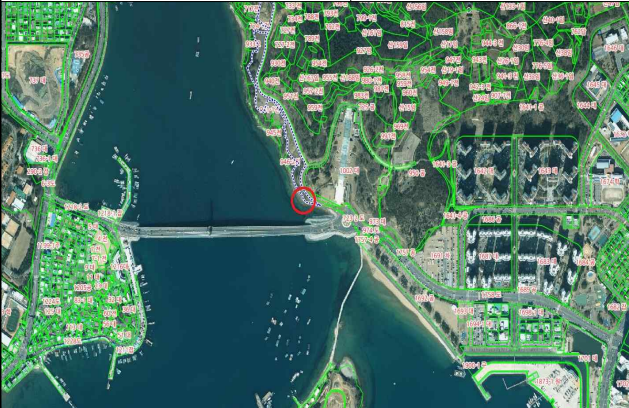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1605호			
<b>무 단 방 치 물(폐목) 제 거 공 고</b>			
발견장소	여수시 시전동 723번지 일원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폐목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4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6월 4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p>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b>2025년 6월 4일(수)까지</b>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5년 5월 20일</p> <p><b>여 수 시 장</b></p> <p>(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p>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제83조3호의2(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한려종합개발 (이은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남화순제2005-02-0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화순2005-10-01)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011-06-04)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제83조제3호의2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 공고 기간: 2025. 5. 20. ~ 2025. 6. 4.(15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여 수 시 장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제83조3호의2(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주)경성해양개발 (유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2-바-09)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제83조제3호의2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 보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2. 공고 기간: 2025. 5. 20. ~ 2025. 6. 4.(15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급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여 수 시 장

##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신청 공고

2025. 5. 20.

여수시장

1. 신청기간 : 2025. 5. 20. ~ 6. 3. (2주간)

### 2.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자격을 갖추어야 함
  - 모집일 이전 여수시에 중개사무소 소재를 두고 있어야 함
  -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함

### 3. 활동내용

- (매물화 작업) 여수시 및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유자 거래 동의 빈집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기초정보(등기·소유 관계, 토지·건축물 대장, 상·하수도, 사진·동영상, 배치도 등), 주변현황(마을현황(마을기부금 납부 등), 생활 인프라 등)등 파악
- 여수시에서 제공하는 빈집 외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빈집도 가능하나, 빈집 여부 확인(여수시에 확인 요청) 및 소유자 동의서 수집 필요

❖ 빈집 :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 (플랫폼 등록) 부동산 거래 플랫폼(네이버부동산, 디스코 등)에 1개소 이상 등록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포털인 '그린대로' 홈페이지(greendaero.go.kr)에 등록
  -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등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 준수
- (관리 및 계약) 소유자와 중개계약 체결 후 빈집 계약 관리 등
  - 소유자와 중개계약 체결 및 관리·계약 등 상황 공유(2주 1회)
  - \* 전속·일반여부는 소유주와 협의 후 결정
  - 빈집거래를 위한 상담·안내 및 계약(매매·임대) 전반의 업무수행

#### 4. 활동비 지급 \* 중개수수료 별도

- (지급한도) 1인당 최대 250만원(5건)까지 활동비 지급
- (지급조건) 시스템 등록(25만원) 및 거래 완료(25만원) 시 지급 원칙
  - (시스템 등록) 1개소 이상의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매물 업로드 및 '그린대로' 홈페이지 등록 후 활동비 지급 요청서(붙임2 참고) 작성·제출
  - (거래 완료) 거래 완료 시 활동비 지급 요청서 작성·제출
  - \* 단, '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유의사항) 빈집 1호당 활동비 지급은 배정된 1인으로 제한
  - (기타) 활동비 지급 세부내용은 시행지침 등 참고

####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붙임1 참고)
  -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건축과 건축행정팀
  - 이메일 : iviker@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1-659-40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서**

업체명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보증보험유무	(유 / 무)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사무실)		연락처H.P)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이용 동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매매, 임대차 등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함)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

업체명, 연락처,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지위를 유지 시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빈집의 매매 등을 위한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매매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위 동의자 :

(날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3. 사업자등록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 신고 내역	<input type="checkbox"/>
	5.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보안 및 윤리 서약서(서식 참고)	<input type="checkbox"/>

<서식: 붙임1(구비서류5) 관련>

## 지역협력 공인중개사 보안 및 윤리 서약서

본인(본 업체)은 2025년 여수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의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로부터 전달받은 빈집 관련 정보(빈집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따라 빈집 거래 업무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2. 빈집 거래를 지원함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목적 외 수집, 활용 및 공개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빈집거래 활성화를 지원함에 있어, 빈집 소유자 및 거래 희망자들의 거래 문의에 대하여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기관 직인)	

여수시장

귀하



<서식: 붙임2(구비서류3)>

## 지역협력 공인증개사 활동비 지급 증빙서류(1단계)

	<p>*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그린대로 등록 화면(캡처기능 사용 등)          (등록여부, 등록시점(날짜) 및 매물화작업(사진촬영, 정보수집 등) 등 확인 가능하도록 구체적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목록 화면</li> <li>- 등록된 빈집 관련 상세 화면(직접 촬영·등록한 내·외부사진 및 빈집정보 표출 필요)</li> <li>- 그린대로 연계 등록 화면</li> <li>- 기타 활동내역 증빙자료(분량제한 없음)</li> </ul>
내 용	* 예시) '25. 00. 00. 플랫폼(OOO) 매물 등록(목록/상세화면)
내 용	* 예시) '25. 00. 00. 그린대로 매물 등록(목록/상세화면)

